문서번호	대법원-2017-두-58496		
결정유형	국승	**세목**	양도소득세
생산일자	2017. 12. 07.	**귀속연도**	2013
제목	(심리불속행)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서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		
요지	(원심 요지)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,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자경여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함		
내용	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.		
관련법령			
상세내용			

사 건 2017두58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상고인 AAA
피고, 피상고인 BB세무서장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. 7. 17. 선고 (춘천)2017누249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

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